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가단52453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문주연, 백강수

피 고 고(故)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오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제일, 조훈희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9.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고(故) A과 피고 C 사이에 2/11 지분에 관하여 2020. 2. 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 D, E은 피고 C에게 각 2/4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1. 피고들과 피고 C 사이에 각 2/44 지분에 관하여 2020. 2. 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들은 피고 C에게 각 2/4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방법원 2010가단425074)를 제기하여 2011. 1. 24. “피고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893,182원과 그중 97,859,269원에 대하여 1998. 9. 30.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6%, 그 다음 날부터 2000. 12. 22.까지는 연 19.8%, 그 다음 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C의 어머니인 F(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20. 2. 9. 사망하자, 고인의 남편인 A, 자녀들인 피고들은 2020. 2. 9. 고인의 소유이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A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A은 2021.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C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 C의 상속지분은 2/11이다.

라.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4. 25.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며, A의 재산을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G기관장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A의 상속인 중 1인인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44 지분(=2/11 지분 ×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나, 이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계약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A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로는 A 소유인데 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고인의 상속재산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을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A이 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는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2) A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A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44 지분(=2/11 지분 × 상속지분 1/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조규설

변경된 별 지 목 록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 28.9㎡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 36.6㎡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호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32.73㎡
2층 13.55㎡. 합.

